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892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 28.

주 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880,580원, 농어촌특별세 2,732,840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422,470원, 농어촌특별세 2,007,790원, 원고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9,759,350원, 농어촌특별세 836,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5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9. 9. 22.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였고,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 A가 15,600주(39%),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4,000주(10%), E이 10,400주(26%), F이 10,000주(25%, 이하 E과 F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 A, B과 그들의 아들인 원고 C가 2013. 7. 10. E,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 4,000주, 10,400주, 6,000주씩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각 19,600주(49%), 14,400주(36%), 6,000주(15%)의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3. 7. 10. E과 F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 7. 10. 원고 A에 대하여 취득세 31,880,580원, 농어촌특별세 2,732,840원, 원고 B에 대하여 취득세 23,422,470원, 농어촌특별세 2,007,790원, 원고 C에 대하여 9,759,350원, 농어촌특별세 836,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1. 이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5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질적으로 그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 A가 E, F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E,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적으로 원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00%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5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한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두108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7, 9 내지 14, 1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A는 2009. 4. 17. 자신 소유인 [redacted]시 G 소재의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원고 B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일 총회일인 2009. 9. 21. 인출하여 자본금으로 전액 납입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40,000주에 대한 주금 상당액은 200,000,000원이다). 이후 위 200,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가 [redacted]도 [redacted]군 H 외 3필지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 A와 I은 발기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감사이며, 설립당시 원고 A와 공동대표이사였던 I은 2011. 3. 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E과 F은 "원고 A와 사이에 2009. 9.경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소유자가 원고 A이므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원고 A에 있고, 원고 A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5

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 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F은 예전 직장동료로서 가깝게 지내는 원고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로 취득하게 될 주식의 정확한 수조차 알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거나 의결권 행사나 이익금 배당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F은 I을 알지 못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보유하면서 E, F에게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해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E, F이 원고 A에게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E, F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점, 원고 A가 주금 전액을 납입하고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여 온 점 등 객관적인 정황도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원고 A와 I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가 설립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F과 원고 A 사이의 관계 및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F은 I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E과 I의 관계 또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I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원고 A가 아닌 I이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5

식을 E,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이 2013. 7. 10.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더라고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실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2013. 7. 10.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종환

판사 박주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5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니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